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520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2. 5. 12.

판결 선고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84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경 피고와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97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와 반납받지 못한 가설자재의 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로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0,000원은 피고가 D 주식회사에게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2014. 12. 5.까지 원고가 D 주식회사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설자재는 유로폼(600×1,200) 4,500매이고,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위 유로폼 전량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며, 차후 유로폼에 대한 문제(사용 중 발생한 문제 및 반납한 유로폼의 등급저하 등)에 대하여 상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서 위 1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은 즉시 피고의 대표이사 E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5. 13. 접수 제745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 G, H과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유로폼 임대료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336,845,700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로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414,192,600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정한 유로폼 임대료 77,346,9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기판력은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진 권리 또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소송물로서 다투어지지 아니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포함한 소송당사자 사이의 일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포기한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1)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류의준

판사이덕균

1)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역시 원고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원고 직원들이 피고와 통모하여 확정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대하여 다투려면 준재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제461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